

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

(이세열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6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1월 27일

발 의 자 : 이세열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현찬, 유 용, 김태수, 김소영,
강동길, 김정태, 김호평, 신정호,
김재형, 조상호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3조)
- 나.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행정지도를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 :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,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.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놀이기구”이라 함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.
2. “어린이놀이시설”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써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조례 제2조 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.
3. “관리주체”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안전관리계획 수립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2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
3.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·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
4.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
5.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
6.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시장은 구청장이 관리·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실태조사 및 위생점검)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련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.

제5조(점검결과 조치)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)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.

1.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·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
2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
3. 설치검사·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전을 위한 사업
4.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등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표창)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,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